

# 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12,699,187	15,380,976
일반회계	496,218,181	14,886,545
특별회계	16,481,006	494,430
기타특별회계	16,481,006	494,430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565,330	16,960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78	2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3,736,673	112,100
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2,398,320	71,950
건축진흥특별회계	400,000	12,000
항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	88,254	2,648
상수도특별회계	5,716,750	171,503
수질개선특별회계	95,284	2,859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2,557,165	76,715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923,152	27,695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46,178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4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, 교부세,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(간주예산)